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
❶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	
	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		
	(전화번호 :)		

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③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(= ⑬)

[illegible]

법인 구분	⑩ 투자금액 (= ⑨)	⑪ 공제율	⑫ 공제세액(=⑩×⑪)
중소기업		10%	
중견기업		7%	
일반기업		5%	

[illegible]

④	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투자자산을 투자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	
②②	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(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)의 상시근로자 수	
②③	상시근로자 수가 ②②에 비해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	
②④	상시근로자 수가 ②②에 비해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두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	
②⑤	고용감소 상시근로자 수 $[(②②-②③) + (②③-②④)]$	
②⑥	고용감소에 따른 납부할 세액 상당액 $(②⑤ \times 1\text{천만원})$	
②⑦	세액공제를 받은 뒤 투자자산을 3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이자 상당액 계산금액	
②⑧	납부 세액 $(②⑥+ ②⑦)$	

100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"⑥ 투자자산 종류란"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7에 해당하는 자산을 적고, "⑧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"란은 해당 자산의 투자를 개시한 이후 지출한 금액의 누적액을 적습니다.
2. "⑪ 진행률"란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발생한 총투자누적액이 총투자에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.
3. "⑬ 누적투자 대상금액"란은 ⑧란의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⑫란의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고, "⑭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"란은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실제지출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.
4. "⑮ 투자금액"란은 "⑯ 투자금액"란에 옮겨 적습니다.
5. "⑰ 합계"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.
6. "⑳ 개월수"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.